

綜合所得稅制度 解說과 申告納付対策

金 翼 來
公認会計士

大統領令 第6643号(1973. 4. 23公布)로 改正된所得稅法 施行令에서는 所得綜合對象者를大幅拡大하여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의範圍를拡大하였고 또 当局에서는 明年부터는 綜合所得稅制度를 世帶別 綜合所得稅制度로大幅改正한다고 한다.

그러나 1974年5月31日까지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는 現行稅法에 依하여야 한다.

以下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의概要와 綜合所得稅計算實例를 들어본다.

一. 分類所得稅制度와 綜合所得稅制度

所得稅의課稅方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하겠다. 그 하나는 納稅者에歸屬되는各種의所得을一括하여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度와 各種의所得을 그所得源泉에 따라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其他所得, 勤勞所得으로 나누어個別의으로課稅하는 分類所得稅制度 및 分類課稅所得稅와 綜合課稅制度의併用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1955年1月1일부터 1958年12月31日까지 分類所得稅制度와併用하여 적용하다 废止하였고 다시 法律 第1966号로制定된 現行所得稅法(1967. 11. 29公布, 1968.

1. 1. 施行에 限定的 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지난 71年 12月28日 同內容이大幅改正되어(法律 第2315号)現在에 이르고 있다.

綜合所得稅制度는 원래 高所得層에 重課하고 低所得層에 輕課하는 租稅負擔公平의原則에 符合되기도 하고 한편 稅源確保라는 国家財政政策上見地에서도 要請되는制度이다.

그러나 이를 運用하는데는相當한 難點이 있다. 各国의所得稅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면 綜合所得稅制度는 独逸·美國等에서 發達한制度이며 分類

課稅制度는 美國·불란서·伊太利等에서 發達한制度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類所得稅制度를並課하고 있는 実情이다.

二. 綜合所得稅制度의 長·短点

1. 長 点

前述한 바와같이 綜合所得稅制度는個人에게歸屬되는 모든所得을綜合하여各種控除制度와累進稅率을 적용함으로서所得稅의理想과合理性을 실현하는 데 그目的이 있다.

따라서 綜合課稅의長点은各種控除制度와累進稅率을 적용함으로서個人別事情에適合한考慮와個人의負擔能力에 따른課稅를行할 수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最低生活費의 免稅, 災害損失 医療費 내지 保險料支出등의控除制度를廣範圍하게 실시하므로서所得稅의本質의하나인社会政策의手段을통하여 그實効를充分히 거둘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累進稅率의 적용으로財政收入의伸縮性을통하여財政政策의effec를發揮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現行 係合所得稅制度에는扶養家族控除制度나災害損失, 医療費乃至 保險料等의控除制度가 없고改正될同制度에는이러한控除制度가 감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綜合所得稅는所得의綜合과超過累進稅率의적용을制度의基本으로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納稅者의负担能力을量的으로把握하여租稅負擔의實質의公平을期하려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言及한 바와같이例外적으로特定의所得에分離課稅가利用되고 있는경우도 있으나 그根據는主로所得의성질에비추어 다른所得과綜合하여課稅하지 아니하는것이

다른所得을 総所하여 하는 것보다 租税負担의 실질적公平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당해 納稅者의 質的 担稅力에 着眼한 것이므로 그分離된 所得에 대한 課稅에 관하여서는 租税負担의 실질적公平을 実現하게 되는 것이다.

課稅標準의 算定을 위한 所得稅別 計算方法은 이러한 취지에서 一面 徵稅上의 便宣도 고려하고 있으나 그 所得計算에 있어 綜合 또는 分離 計算方法이 採用되는 것이다.

2. 短 点

綜合所得稅의 이러한 長點은 곧 短点으로 浮刻된다.

所得計算과 그 手續의 복잡이 全的으로 納稅義務者의 申告制度에 依存하게 됨으로 租税에 대한知識와 覺醒이 극도로 昂揚되어 있지 않는限도리어 租稅회피나 脱稅의 素地를 提供하며 따라서所得把握이 용이한 紿與所得者나 低所得者에 대한重課가 結果적으로 야기되는 경향이 있고 脱稅를 방지하기 위한 稅源調査는 각個人의 私生活에 干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不必要한 마찰을 招來하기가 쉽다.

또는 綜合所得에 있어서의 徵稅上의 번잡한 納稅節次는相當한 水準의 稅務行政技術을 要求한다.

三.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의 概要

우리 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從前 分類 所得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各分類所得稅別一定金額以上의 高所有得者에 限하여 住所地에서 各所得을 合算하여 課稅하는 制度이다.

即 現行 制度는 分類 課稅所得을 合算하여 重課한다는 것과, 한가지 所得發生者라도 高所得者인 경우에는 重課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分類所得稅制度에서 綜合所得稅制度로 轉換시키기 위한 過度的 制度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나라 所得稅制度로는 큰 転機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1. 納稅義務者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는 다음 各号의 要件에 全部 該當되어야 하고 이중 한 要件이라도 該當되지 아니하면 納稅義務가 없다.

① 国内에 住所를 두거나 6月以上 居所를 둔個人

② 1年間(1月1日~12月31日 以下同一) 分類課稅 所得金額(非課稅所得免除所得, 基礎控除金額등을 包含하지 아니한 다음表의 綜合所得金額)이 300万원 以上인 者.

③ 다음의 所得綜合對象者(1年間)

| 区 分 | 金 額 |
|--------|-----------|
| 不動產所得 | 50萬원以上 |
| 配當利子所得 | " |
| 事業所得 | 100萬원以上 |
| 勤勞所得 | 180萬원 (註) |
| 其他所得 | 30萬원 |

(註) 甲種勤勞所得者는 1年中 月 課稅所得金額이 15萬 원 以上의 實債이 있는者, 乙勤者는 45萬원 以上의 實債이 있는者는 所得綜合對象者로 看做한다.

綜合所得金額 = 1年間 總所得金額 - (預金 · 積金 · 賦金등의 利子 + 山林所得十年金 또는 退職給與+非課稅所得+免除所得(所得稅法 第8條 3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除外)+畜産業에 대한 減免所得+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緊急命令 第62條 3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基礎控除額(事業所得, 勤勞所得)+住宅福券 当籤金

2. 綜合所得稅納稅義務의 排除

年間所得額이 300萬원 이상이 되는자라 하더라도 分類課稅 所得金額이 前期 各号의 綜合所得 对象金額에 未達하는 者에 대하여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令 第124條)

例를 들어 어느 特定人の 年間所得으로 事業所得 95萬원, 配當利子所得 41萬원, 甲種勤勞所得 140萬원, 不動產所得 40萬원, 其他所得 25萬원 合計 358萬원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各分類所得金額은 綜合所得對象 金額에 각各 未達하기 때문에 綜合所得稅를 賦課할 수 없는 것이다. 反對로 他所得은 하나도 없고 事業所得의 課稅所得(他分類課稅所得 중 어느所得이라도同一)이 年間 300萬원 이상인 경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다.

3. 綜合所得稅의 課稅地

綜合所得稅의 課稅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되어 있다(法 第60條).

이것이 各事業場에서 賦課하는 分類所得稅와 다른 点이다. 萬一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가 2個以上인 경우에는 그 主된 住所地 또는 居所地(즉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課稅地로 하고 있다.

(令 第125條, 規則第92條).

4. 綜合所得稅의 計算

綜合所得稅額은 다음의 区分에 의한 각 稅率을 遷次로 適用하여 계산한 金額의 合計額에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에서 各 分類課稅 所得의 算出稅額(實際納付稅額이 아님)을 控除한 金額이다.

다만 綜合所得稅額에 申種配當利子所得(紙上配當金을 包含한다)이 包含한 경우에는 그 支給者別 甲種配當 利子所得에 金額別로 非公開法人 法人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의 100分의 50에相當하는 金額(法64)과, 企業公開促進法第13條의 規定에 의거 公開法人의 株主로서 發行株式總數의 30%以下를 所有한 株主가 그 公開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者所得이 綜合所得 金額에 合算된 경우에는 綜合課稅算出稅額中 그 配當所得에 該當하는 稅額의 50%에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다(法 第13條).

그러나 稅額控除에 있어서 分類課稅所得의 算出稅額과 甲種配當所得에 대한 非公開法人의 稅率을 適用한 金額의 合計額은 綜合課稅算出稅額에 同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 施設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 된 경우에는 그 紙上配當所得에 대한 稅額에 당해 積立金을 積立한 날로부터 그 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決定된 날까지 그 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迥5錢으로 계산한 金額을 分類課稅 算出稅額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稅額計算過程과 稅率을 算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綜合所得金額} \times \text{稅率} &= \text{綜合課稅} \\ &\quad \text{算出稅額} \\ \text{綜合課稅} - \text{算出稅額} &= \text{分類課稅算出稅額} - \text{配當金에 대한 세액공제} \text{ (法第64條)} - \text{配當金에 대한 공제세액} \text{ (企業公開促進法第13條)} = \text{綜合課稅 決定稅額.} \end{aligned}$$

| 課稅所得稅額 | 稅率 | 累進控除額 |
|----------------|-----|-----------|
| 300萬원 以上的 金額 | 30% | — |
| 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 50% | 600,000 |
| 600 " " | 55% | 900,000 |
| 1,500 " " | 60% | 1,60,000 |
| 4,500 " " | 65% | 3,900,000 |

5.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 節次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節次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가 当該年度分(1973. 1. 1 ~ 1973. 12. 31. 까지의 所得分)의 綜合所得金額을 그 翌年(1974年) 5月末日까지 住所地 또는 居所地의 所管稅務署長에서 「綜合所得稅에 대한 所得金額 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申告所得金額 内訛을添附하여 自進申告 納付토록 되어 있다. (法 第65條, 第66條 및 令 第128條 第1項, 第129條)

萬一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가 申告를 한 後 住所地 또는 居所地를 移転한 때에는 그 移転한 날로부터 10日以内에 前住所地 所管稅務署長과 新住所地 所管稅務署長에게 각各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 住所地 變更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또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 있는 者가 綜合所得稅의 申告納付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綜合所得稅를 申告 納付하여야 한다. (令 第128條第3項)

6. 綜合所得稅의 加算稅

만일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와 綜合所得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綜合課稅 算出稅額에 다음의 金額을 加算하여 稅額으로 徵收하도록 하고 있다.

(法 第68條)

가. 申告不誠實加算稅

申告를 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의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分類課稅算出稅額과 甲種配當利子 所得에 대한 控除稅額을 控除한 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에 該當하는 稅額의 100分의 30에相當하는 金額을 申告不誠實加算稅로 徵收한다.

申告不誠實加算稅의 計算算式은 다음과 같다.

(綜合課稅 算出稅額－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申告하여야 할
甲種配当利子所得에 대한 控除稅額) × 申告하여야 할

$$\frac{\text{金額에 未達한 金額(無申告의 경우는 綜合所得金額)}}{\text{綜合 所 得 金 額}} \times \frac{30}{100}$$

나. 納付不誠實加算稅

綜合所得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 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分의 10에相當하는 金額을 納付不誠實 加算稅로 徵收한다. 이 때 納付不誠實加算稅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text{綜合課稅算出稅額} = (\text{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甲種配當利子所得에 대한 控除稅額} + \text{自進納付稅額}) \times \frac{10}{100}$$

그러나 綜合所得稅額을 申告 納付한 後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余金의 處分에 의한 賞與金의 支給이 된 때 또는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當該 課稅所得金額의 變動이 있음으로 因하여 綜合所得稅의 納付義務가 생기거나 이미 決定된 綜合所得金額과 差額이 생긴 때에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内에 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게 되면 申告不誠實加算稅 및 納付不誠實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7. 綜合所得金額의 決定

政府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한 申告書에 의하여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을翌年 6月末日까지 決定한다. 그러나 다음의 事由가 發生하여 綜合所得金額의 增減이 있을 때에는 이를 更正決定할 수 있다.

가. 綜合所得金額中 申告期限 이후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余金處分에 의한 賞與金이 支給된 때.

나. 定期分의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 당해 課稅所得金額의 變動이 있을 때.

四. 綜合所得稅額 計算實例

〈事例 1〉

勤勞所得만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경우

1) 홍길동은 甲會社 代表理事로서 在職하고 있어 每月 甲社에서 350,000원 씩 紹料를 支給받고 있다. 홍길동의 1973年度 所得에 대한 74年 5月 31日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算出하라.

〈解 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

$$(350,000 - 15,000) \times 48\% - 44,200 = 118,6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118,600 \times 12 = 1,423,2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算出稅額

$$3,000,000 \times 30\% = 900,000$$

$$1,020,000 \times 50\% = 510,000$$

$$\underline{4,020,000 \text{ (註) } 1,410,000}$$

$$(註) 4,200,000 - 180,000 \text{ (12月分의 基礎控除額) } =$$

$$4,020,000$$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410,000 - 1,423,200 = \triangle 13,200 \text{ (원) }$$

2) 勤勞所得地가 그 以上인 경우

김영철은 每月 支給받는 勤務地가 네 곳으로 1973年度中 支給받은 勤勞所得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이 1974年 5月 31日까지 自進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甲勤務地 1,800,000 (月平均 150,000) 主된勤務地

乙 " 960,000 (月平均 80,000)

丙 " 840,000 (月平均 70,000)

計 3,600,000

〈解答〉 1. 分類課稅 算出稅額(甲勤稅)

(甲勤務地)

$$(150,000 - 15,000) \times 32\% - 16,200 = 27,0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27,000 \times 12 = 324,000$$

(乙勤務地)

$$80,000 \times 19\% - 4,400 = 10,800$$

$$10,800 \times 12 = 129,600$$

(丙勤務地)

$$70,000 \times 19\% - 4,400 = 8,900$$

$$8,900 \times 12 = 106,800$$

(合計)

$$324,000 + 129,600 + 106,800 = 560,400$$

2. 綜合課稅 算出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cl} 3,000,000 \times 30\% & = & 900,000 \\ 420,000 \times 50\% & = & 210,000 \\ \hline 3,420,000 & & 1,110,000 \end{array}$$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110,000 - 560,400 = 549,600 \text{ (自進申告納付稅額)}$$

〈事例 2〉 事業所得吐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
가 있는 경우

홍길동은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고 1973 年度中
發生한 事業所得이 다음과 같다.

홍길동이 1974 年 5 月 31 日까지 自進納付할 綜
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第1期 1,500,000 원

第2期 2,000,000 원

3,500,000 원

〈解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事業所得稅)

(第1期)

$$(1,500,000 - 90,000) \times 38\% - 101,500 = 434,300$$

(累進控除額)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cl} 3,000,000 \times 30\% & = & 900,000 \\ 320,000 \times 50\% & = & 160,000 \\ \hline & & 1,060,000 \end{array}$$

(註) 綜合所得金額 = 3,500,000 - 180,000 (基礎控除
額) = 3,320,0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060,000 - 1,099,600 = \triangle 39,600$$

(参考) 上記例와 같이 다른所得이 없고 勤勞所
得이나 事業所得이 한 勤務地나 한 事業場에서만
있으며 綜合所得金額이 約 300余万원인 경우에는
綜合所得稅로서 實際 納付할 稅額이 없게 되나 이
경우에도 申告書는 提出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申告後 稅務署의 檢查結果 勤勞所
得이나 事業所得金額이 追增되는 경우에 無申告
시에는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賦課받게 되기 때문
이다. (筆者 (26) 9908)

訂 正

2.3月號 P-73의 図表는 아래와 같이 訂正하여 再告示합니다.

日本工事費 現時勢表

| | |
|-----------|-----------------------------------|
| 生 콘 크 라 트 | 5,700 YEN(円) /m ² |
| 시 멘 트 | 6,300 " /TON |
| 불 록 크(A種) | 100 YEN / 個 |
| 鐵 筋 | 84,000~80,000 YEN/TON |
| L. G. S. | 89,000 YEN / TON |
| 영 글 | 81,000 YEN / TON |
| 石綿슬래이트 | 780 YEN / m ² |
| 防 水 劑 | 1,500~5,700 YEN/18ℓ |
| 木 材 | 60,000~120,000 YEN/m ² |
| 유 리 | 2,500 YEN (5 mm透明) m ² |

('74年1月末 現在)

p-8 「建築物의 建築抑制」欄의 對象建築物 및 適用地域의
図表中 「現行」의 1. 對象建築物. 가) 公共建築物

“1) 學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舎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의 庁舎”의 誤植입을 바로 잡습니다.

会員動静(全北支部 '74. 1月號) (誤) 金炯直 (正) 全炯直

(1974. 2·3月号 韓國의 古建築 p. 17)

| 페이지 | 誤 | 正 |
|------|-------------------------|-------------------|
| 17 | 建築班研究室 提供 | 建築班研究室 金鴻植 摄影 |
| 17 | 前面包 | 無量壽殿 前面包 |
| 21 | 浮石寺 梵鍾閣 半間 | 安養門 半間 |
| 22 | 後面 | 梵鍾閣 後面 |
| 25 | 前面 上部 | 祖師堂 前面包 |
| 25 | 귀包 | 祖師堂 귀包 |
| 25 | 包 | 安養門 包 |
| ※ 25 | 浮石寺 無量壽殿 高麗中期 13世紀疊組一形式 | 祖師堂 架構 14世紀 柱心包樣式 |
| ※ 26 | 浮石寺 祖師庵 架構 高麗末14世紀疊組三形式 | 無量壽殿 13世紀 柱心包樣式 |
| 26 | 前面 귀包 | 無量壽殿 前面 귀包 |
| 26 | 內部 大樑半是 架構 | 無量壽殿 內部 대들보부분 架構 |
| 27 | 宝蓋 上部 | 無量壽殿 宝蓋 上部 |
| 27 | 內部 檻樑半是 架構 | 無量壽殿 內部 檻樑半是 架構 |
| 27 | 西側 前面 | 祖師堂 西側面 |
| 28 | 前面階段 | 無量壽殿 前面階段 |
| 29 | 內部 귀包半是 架構 | 無量壽殿 內部 귀부분 架構 |